

연구소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신규대조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<p>제4조 (평가) ① 미래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평가지표(서식 2)에 따라 매 학년도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월에 평가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 (평가) ① 미래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평가지표(서식 2)에 따라 매 학년도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월에 평가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동일)</p>	서식2 수정
	<p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서식 2)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p>	

공통지표(40%)				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비고	
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	가. 연구소 설립목표에 근거한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- 연구소 설립목표에 따라 사업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- 연구소의 사업계획과 사업성과 내용이 일치하는가	10	정성	
연구소 운영의 내실화	가. 연구소 운영의 내실화, 활성화 노력: 연구소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여부 등 - 연구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(연구소의 운영방향, 사업내용 협의 등이 활발한지) - 홈페이지구축, 자료업데이트 등의 연구소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가(부설연구소 평가에 한함)	10		
대학발전기여도 3-way (택1) ① 연구발전 20점 ② 교육발전 20점 ③ 연구발전 10점 + 교육발전 10점	가. 대학 연구발전성과 연계성: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대학차원의 중장기 연구발전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	20*		
	나. 대학 교육발전성과 연계성: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대학차원의 중장기 교육발전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	20*		
합계		40		
개별지표(60%)				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가기준	배점	비고
연구 활동	교내 연구과제 수	건당 3점	최대 60점	정량
	교내 연구비 수혜 금액	합계 100만원당 1점 (예: 150만원 1점)		
	연구논문, 저서, 연주/발표 등	건당 3점		
	외부 연구과제 수	건당 5점		
	외부 연구비 수혜 금액	합계 500만원당 4점 (예: 800만원 4점)		
	간접비 규모 (총 간접비 납부액)	합계 100만원당 2점 (간접비 비율 10% 미만 제외)		
학술 활동	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	국제 건당 10점, 국내 건당 5점	60	
	세미나 및 워크숍(포럼) 등	건당 3점, 년 3회 까지 인정		
	보고서 등(연구활동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)	건당 3점, 년 2회 까지 인정		
	학술지 발간(한국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) 이상)	60점		
합계			60	
총점			100	
* 연구활동과 학술활동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, 중복 인정 가능함 (보고서 등은 제외) * 연구논문, 저서, 연주/발표 등은 전임교원 교내 연구과제 실적 기준을 적용함 *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의 주제가 연구소 연구주제와 부합할 경우 인정				

1. 연구비 수주실적 인정범위: 입금일 기준으로 산정함

가.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통합 관리를 실시한 수주실적만 인정함

나. 연구소가 수주한 금액만 인정함

2. 학술대회 개최실적 인정범위

가. 국제학술대회: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를 인정함. 단, 국제학술대회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연구자 5인 이상 발표, 외국국적 발표자의 국적은 최소 3개국 이상이어야 함

나. 국내학술대회: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로서 4인 이상의 논문발표자가 있어야 하며, 그 중 2인 이상이 외부 초청 발표자일 경우에만 인정함

다. 기타 학술행사: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공식적인 대외 공고 후, 소규모 세미나,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술행사

<변경 후>

서식2

연구소 평가표

공통지표(40%)				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비고	
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	가. 연구소 설립목표에 근거한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- 연구소 설립목표에 따라 사업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- 연구소의 사업계획과 사업성과 내용이 일치하는가	10	정성	
연구소 운영의 내실화	가. 연구소 운영의 내실화, 활성화 노력: 연구소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여부 등 - 연구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(연구소의 운영방향, 사업내용 협의 등이 활발한지) - 홈페이지구축, 자료업데이트 등의 연구소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가(부설연구소 평가에 한함)	10		
대학발전기여도 3-way (택1) ① 연구발전 20점 ② 교육발전 20점 ③ 연구발전 10점 + 교육발전 10점	가. 대학 연구발전성과 연계성: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대학차원의 중장기 연구발전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	20*		
	나. 대학 교육발전성과 연계성: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대학차원의 중장기 교육발전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	20*		
합계		40		
개별지표(60%)				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가기준	배점	비고
연구 활동	교내 연구과제 수	건당 3점	최대 60점	정량
	교내 연구비 수혜 금액	합계 100만원당 1점 (예: 150만원 1점)		
	연구논문, 저서, 연주/발표 등	건당 3점		
	외부 연구과제 수	건당 5점		
	외부 연구비 수혜 금액	합계 500만원당 4점 (예: 800만원 4점)		
	간접비 규모 (총 간접비 납부액)	합계 100만원당 2점 (간접비 비율 10% 미만 제외)		
학술 활동	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	국제 건당 10점, 국내 건당 5점	60	
	세미나 및 워크숍(포럼) 등	건당 3점, 년 3회 까지 인정		
	보고서 등(연구활동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)	건당 3점, 년 2회 까지 인정		
	학술지 발간(한국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) 이상)	60점		
합계			60	
총점			100	

* 연구활동과 학술활동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, 중복 인정 가능함 (보고서 등은 제외)
* 연구논문, 저서, 연주/발표 등은 전임교원 교내 연구과제 실적 기준을 적용함
*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의 주제가 연구소 연구주제와 부합할 경우 인정

1. 연구비 수주실적 인정범위: 입급일 기준으로 산정함

가.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통합 관리를 실시한 수주실적

나. 연구소 또는 연구소 소속 위원의 수주금액

2. 학술대회 개최실적 인정범위

가. 국제학술대회: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를 인정함. 단, 국제학술대회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연구자 5인 이상 발표, 외국국적 발표자의 국적은 최소 3개국 이상이어야 함

나. 국내학술대회: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로서 4인 이상의 논문발표자가 있어야 하며, 그 중 2인 이상이 외부 초청 발표자일 경우에만 인정함

다. 기타 학술행사: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공식적인 대외 공고 후, 소규모 세미나,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술행사

3. 연구소 지원으로 수행된 학부생, 대학원생 연구의 경우, 연구 활동·학술 활동 평가내용에 준하는 활동은 위 평가 기준으로 인정함